

④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를 언론등에 공표(公表)할 수 있다. 다만, 다른 법률에서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0.1.18>
⑤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·방법 등 성희롱 방지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[전문개정 2008.6.13]

4. 성희롱 고충담당자 지정
 5. 자체 성희롱 예방지침의 마련
 6. 그 밖에 자체 성희롱 방지를 위한 조치
-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1. 성희롱 예방에 관한 법령
 2. 성희롱 발생 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
 3.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
 4.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
 5. 그 밖에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
- ③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성희롱 방지조치의 결과를 매년 2월 말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3.15>
- ④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성희롱 방지 조치결과를 전산입력방식 등의 서면으로 점검하되, 필요하면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10.3.15>
- ⑤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점검 후 6개월 이내에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3.15>
-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